

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303)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
표 2.1.1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<table><tr><th>설치장소</th><th>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1. ~ 5. 생략</td></tr><tr><td>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·노유자시설·업무시설·발전시설·종교시설(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)·교육연구시설·수련시설·공장·창고시설·교정 및 군사시설(국방·군사시설 제외)·기숙사·자동차정비공장·운전학원 및 정비학원·다중이용업소·복합건축물·아파트</td><td>· 소형피난구유도등 · 통로유도등</td></tr><tr><td>7. 그 밖의 것</td><td>· 피난구유도표지 · 통로유도표지</td></tr></table> [비고] 1.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유도등 또는 소형피난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 2.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,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	설치장소	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	1. ~ 5. 생략		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·노유자시설·업무시설·발전시설·종교시설(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)·교육연구시설·수련시설·공장· 창고시설 ·교정 및 군사시설(국방·군사시설 제외)· 기숙사 ·자동차정비공장·운전학원 및 정비학원·다중이용업소·복합건축물· 아파트	· 소형피난구유도등 · 통로유도등	7. 그 밖의 것	· 피난구유도표지 · 통로유도표지	표 2.1.1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<table><tr><th>설치장소</th><th>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1. ~ 5. 생략</td></tr><tr><td>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·노유자시설·업무시설·발전시설·종교시설(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)·교육연구시설·수련시설·공장·교정 및 군사시설(국방·군사시설 제외)·자동차정비공장·운전학원 및 정비학원·다중이용업소·복합건축물</td><td>· 소형피난구유도등 · 통로유도등</td></tr><tr><td>7. 그 밖의 것</td><td>· 피난구유도표지 · 통로유도표지</td></tr></table> [비고] 1.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유도등 또는 소형피난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 2. 복합건축물의 경우,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	설치장소	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	1. ~ 5. 생략		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·노유자시설·업무시설·발전시설·종교시설(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)·교육연구시설·수련시설·공장·교정 및 군사시설(국방·군사시설 제외)·자동차정비공장·운전학원 및 정비학원·다중이용업소·복합건축물	· 소형피난구유도등 · 통로유도등	7. 그 밖의 것	· 피난구유도표지 · 통로유도표지	공동주택 및 창고시설
설치장소	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																	
1. ~ 5. 생략																		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·노유자시설·업무시설·발전시설·종교시설(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)·교육연구시설·수련시설·공장· 창고시설 ·교정 및 군사시설(국방·군사시설 제외)· 기숙사 ·자동차정비공장·운전학원 및 정비학원·다중이용업소·복합건축물· 아파트	· 소형피난구유도등 · 통로유도등																	
7. 그 밖의 것	· 피난구유도표지 · 통로유도표지																	
설치장소	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																	
1. ~ 5. 생략																		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·노유자시설·업무시설·발전시설·종교시설(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)·교육연구시설·수련시설·공장·교정 및 군사시설(국방·군사시설 제외)·자동차정비공장·운전학원 및 정비학원·다중이용업소·복합건축물	· 소형피난구유도등 · 통로유도등																	
7. 그 밖의 것	· 피난구유도표지 · 통로유도표지																	